경상북도 의성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군보 의성군

제266호 2026. 9. 17(목)

선람	기관의장

조 례

○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 2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 3
○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7
○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21

규 칙

○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 규칙의 일괄개정에 관한 규칙 ····· 28
○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31

훈 령

○ 의성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 38
○ 의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 45

회람								

발 행 : **경상북도 의성군** 편 집 : **홍보과**

조 례

제292회 의성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 2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7일

의 성 군 수

의성군 조례 제 3018 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 2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조(「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탁신청) ① 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의 관리·운영을 각각 위탁받고자 하는 농협 등과 단체(법인)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법인등기부등본	**제6조(위탁신청)** ① ----------. 1. (현행과 같음)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현 행	개 정 안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 정】

◇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상업등기법」및「상업등기규칙」의 법령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를 통일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어 정비(2개 조례)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2조제2호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2호

제292회 의성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7일

의 성 군 수

의성군 조례 제 3019 호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군수”를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한다.

제20조제5항 전단 중 “영 제7조”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별표 3의 기준”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
2.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의 사망 : 3일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사망: 3일
5.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사망 : 1일 제2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세”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4개월”을 각각 “36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영 제7조”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재직기간 내에서 3회 이내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제11항제3호 중 “재난”을 “재난, 선거”로 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별표 1]

선 서 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별표 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별표 2]

공직자의 행동률(제5조 관련)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ㅇ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ㅇ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ㅇ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ㅇ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ㅇ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ㅇ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ㅇ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 한다. ㅇ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ㅇ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ㅇ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 한다.	ㅇ 시간을 엄수한다. ㅇ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ㅇ 근검절약한다. ㅇ 남에게 겸손 한다. ㅇ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ㅇ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ㅇ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ㅇ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ㅇ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ㅇ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9조의2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1일 가산
-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파견근무) ①·② (생 략)	**제11조(파견근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③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제13조(복장) ① (생 략)	**제13조(복장)**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따른다.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0조(연가계획 허가) ① ~ ④ (생 략)	**제20조(연가계획 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무상 영 제7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

현 행	개 정 안
⑤ 공무상 영 제7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24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4조(특별휴가)**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② 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 2.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 조부모의 사망 : 3일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

현 행	개 정 안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사망: 3일 5.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사망: 1일
③ ~ ⑤ 삭 제	
⑥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 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⑥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36개월----------. ----------36개월----------.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⑦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영 제7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따른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⑦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⑨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1회 휴가 일수는 5일 이상 10일 이내로 한다.	⑨ ----------. 다만, 이 경우 해당 재직기간 내에서 3회 이내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⑪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⑪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주요업무(행사, 재난 등)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3. ----------재난, 선거----------.
⑫·⑬ 삭 제	
⑭ (생 략)	⑭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선서문 【별표 1】 선 서 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1] 선서문 ■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별표 1] 선 서 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별표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 ■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별표 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현 행

[별표 2] 공직자의 행동률

【별표 2】

공 직 자 의 행 동 률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ㅇ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ㅇ 시간을 엄수한다.
ㅇ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ㅇ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ㅇ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ㅇ 근검절약한다.
ㅇ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ㅇ 남에게 겸손 한다.
ㅇ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ㅇ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ㅇ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ㅇ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ㅇ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 한다.	ㅇ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ㅇ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ㅇ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ㅇ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ㅇ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ㅇ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 한다.	ㅇ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별표 3】 <개정 2019.05.14., 2020.12.31.>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 제1항, 제2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개 정 안

[별표 2] 공직자의 행동률

■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별표 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별표 4】 <개정 2019.05.1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1일 가산 -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9조의2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1일 가산 -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개 정】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복무 운영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경조사휴가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경조사휴가 기준 반영

○ 육아시간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제6항)

- 사용대상: 5세 이하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
- 사용기간: 24개월 ⇒ 36개월로 확대

○ 장기재직휴가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24조제9항)

○ 포상휴가 대상 확대(선거업무 추가) (안 제24조제11항)

제292회 의성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7일

의 성 군 수

의성군 조례 제 3020 호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별표 1]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1. 체육시설

(단위 : 원)

시 설 명		구 분	세부 기준	이 용 료	비 고
의성종합운동장		단체 / 육상트랙	1일 / 2시간	4,000	·단체 : 10인 이상의 동일 소속팀
		단체 / 축구경기장	1일 / 2시간	10,000	
의성체육관 (배드민턴)		개인 / 1코트	1일 / 2시간	1,500	
		개인 / 1코트	1개월 / 1일 2시간	30,000	
의성군민 테니스장		개인 / 1코트	1일 / 2시간	1,500	
		개인 / 1코트	1개월 / 1일 2시	30,000	
의성읍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풋살장 족구장 탁구장	개인 / 1면	1일 / 2시간	1,500	
서의성 탁구장		개인 / 1면	1개월 / 1일 2시간	30,000	

2. 의성컬링센터

(단위 : 원)

운영시간	구 분	세부 기준	이 용 료		비 고
			토요일 공휴일	평일	
09:00~21:00	개인, 단체	1개시트 / 2시간	100,000	80,000	·[별표 2] 제1항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토요일·공휴일의 경우에도 평일 이용료 적용

3. 파크골프장

(단위 : 원)

구 분	개 인			단 체		
	일반	청소년·군인	65세이상	일반	청소년·군인	65세이상
연회비	120,000	84,000	60,000	60,000	42,000	30,000

구 분	기 준	이 용 료	
		65세 이상	65세 미만
일일 이용자	관내 주소자	2,000	4,000
	관외 주소자	4,000	8,000
비 고	1.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20명 이상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연회원은 주민등록법상 의성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 3. 연회원은 통합회원으로 운영하며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파크골프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4. 연회원은 군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모집하되, 수시모집 할 수 있다. 5. 이용 시간은 1일 1회 4(3)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6.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 감면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이용료 납부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외에 주소를 둔 일일이용자에게 징수한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의성사랑상품권으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4. 의성국민체육센터

□ 수영장 (단위 : 원)

운영시간	대상 \ 기간	1일	1개월
06:00~21:00	어린이	1,500	30,000
	청소년	2,000	40,000
	일반인	3,000	60,000
	【 비 고 】 1. 이용료 : 1인 기준 2. 단체 입장시 (30인 이상) 30% 할인 3. 1개월 이용자는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무료 이용 4. 이용시간 : 1일 2시간		

□ 헬스장 (단위 : 원)

운영시간	대상 \ 기간	1일	1개월
06:00~21:00	청소년	1,000	20,000
	일반인	1,500	30,000
	【 비 고 】 1. 이용료 : 1인 기준 2. 단체 입장시 (30인 이상) 30% 할인 3. 이용시간 : 1일 2시간 4. 어린이는 사용을 제한함		

□ 취미교실·교양 강좌 프로그램 수강료 (단위 : 원)

과 목	기 준	대 상	수강료	비 고
· 교양강좌 · 취미교실	· 1인 1월(1과목) · 월 16시간 이상	청소년	10,000	· 재료비 별도
		일반인	20,000	

5. 의성여성전용헬스장

(단위 : 원)

운영시간	기간 / 대상	1일	1개월
06:00~21:00	청소년	1,000	20,000
	일반인	1,500	30,000
	【 비 고 】 1. 이용료 : 1인 기준 2. 이용시간 : 1일 2시간 3. 어린이는 사용을 제한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1] 체육시설 이용료

3. 파크골프장

(단위 : 원)

구분	기 준		개 인			단 체		
			일반	청소년·군인	65세 이상	일반	청소년·군인	65세 이상
비안 파크골프장	연 회 원		100,000	70,000	50,000	50,000	35,000	25,000
	일일 이용자	관내 주소자	65세 이상		65세 미만	-		
			2,000		4,000			
		관외 주소자	65세 이상		65세 미만			
			4,000		8,000			
비 고	1.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20명 이상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연회원은 주민등록법상 의성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 3. 연회원은 군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모집하되, 수시모집 할 수 있다. 4. 이용 시간은 1일 1회 4(3)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5.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 감면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이용료 납부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개 정 안

[별표 1] 체육시설 이용

3. 파크골프장

(단위 : 원)

구 분	개 인			단 체		
	일반	청소년·군인	65세 이상	일반	청소년·군인	65세 이상
연회원	120,000	84,000	60,000	60,000	42,000	30,000

구 분	기 준	이 용 료	
		65세 이상	65세 미만
일일 이용자	관내 주소자	2,000	4,000
	관외 주소자	4,000	8,000
비 고	1.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20명 이상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연회원은 주민등록법상 의성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 3. 연회원은 통합회원으로 운영하며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파크골프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4. 연회원은 군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모집하되, 수시모집 할 수 있다. 5. 이용 시간은 1일 1회 4(3)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6.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 감면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이용료 납부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외에 주소를 둔 일일이용자에게 징수한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의성사랑상품권으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개 정】

◇ 개정이유

의성위천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라 파크골프장의 이용료 체계를 정비하고, 통합 회원권을 신설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여 파크골프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파크골프장 이용료 체계 정비(별표 1)

- 기존 비안파크골프장 회원권을 폐지하고 비안파크골프장과 의성위천파크골프장을 통합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회원권 신설
- 관외 일일이용자의 이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의성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규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 규칙의 일괄개정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7일

의 성 군 수

의성군 규칙 제 1476 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 규칙의 일괄개정에 관한 규칙

제1조(「의성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의 개정) 의성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의성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4조(대행업자 지정) ①·② (생 략)	**제4조(대행업자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별표 1에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산증명서(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 정】

◇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법령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를 통일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어 정비(1개 규칙)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의성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4조제3항제2호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7일

의 성 군 수

의성군 규칙 제 1477 호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1. 전문체육시설

시설명칭	위 치	관련 시설물
의성종합운동장	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104	축구경기장, 육상 트랙
의성체육관	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88	
의성종합체육관	의성군 의성읍 의성길안로 93	
의성군민테니스장	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88	
의성생활체육야구장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153	
의성읍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50	풋살장, 족구장, 탁구장
의성국민체육센터	의성군 단북면 안계길 251	
의성컬링센터	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72	
서의성탁구장	의성군 단북면 안계길 247	
비안파크골프장	의성군 비안면 동부리 162-1	
의성위천파크골프장	의성군안계면용기리1124(안계구장) 의성군단북면노연리1084(단북구장)	
의성여성전용헬스장	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104	

2. 읍면 생활체육시설

시설명칭	종류(종목)
읍면 생활체육시설	다목적체육관,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풋살장, 야외운동기구 등 관할 읍·면장이 관리하는 실내·외 체육시설

■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별표 2]

체육시설의 정기 휴관일(제3조제1항 관련)

시설명칭	휴 관 일	비고
의성종합운동장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의성체육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의성종합체육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의성군민테니스장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의성생활체육야구장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의성읍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의성국민체육센터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의성컬링센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 매주 월요일	
서의성탁구장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비안파크골프장	- 매주 월요일 - 매년 3월~4월 중 잔디 보호 정기 휴장	
의성위천파크골프장	- 매주 화요일 - 매년 3월~4월 중 잔디 보호 정기 휴장	
의성여성전용헬스장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별표 3]

체육시설의 운영기간 및 사용시간(제4조제1항 관련)

시설명칭	운영기간 및 사용시간	비 고
의성종합운동장	- 운영기간: 연중(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09:00~22:30	
의성체육관	- 운영기간: 연중(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09:00~22:30	
의성종합체육관	- 운영기간: 연중(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09:00~22:30	
의성군민테니스장	- 운영기간: 연중(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09:00~22:30	
의성생활체육야구장	- 운영기간: 연중(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09:00~22:30	
의성읍 농어촌복합체육시설	- 운영기간: 연중(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09:00~22:30	
의성국민체육센터	- 운영기간: 연중(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09:00~21:00	
의성컬링센터	- 운영기간: 연중(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09:00~21:00	
서의성탁구장	- 운영기간: 연중(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09:00~22:30	
비안파크골프장	- 운영기간: 연중(휴장일 제외) - 사용시간: (하계) 06:00~18:00 (동계) 07:00~17:00	
의성위천파크골프장	- 운영기간: 연중(휴장일 제외) - 사용시간: (하계) 06:00~18:00 (동계) 07:00~17:00	
의성여성전용헬스장	- 운영기간: 연중(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06:00~21:0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1. 전문체육시설

시설명칭	위 치	관련 시설물
의성종합운동장	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104	축구경기장, 육상 트랙
의성체육관	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88	
의성종합체육관	의성군 의성읍 의성길안로 98	
의성군민테니스장	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88	
의성생활체육야구장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153	
의성읍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50	풋살장, 족구장, 탁구장
의성국민체육센터	의성군 단북면 안계길 251	
의성컬링센터	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72	
서의성탁구장	의성군 단북면 안계길 247	
비안파크골프장	의성군 비안면 동부리 162-1	
의성여성전용헬스장	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104	

[별표 2] 체육시설의 정기 휴관일

시설명칭	휴 관 일	비 고
의성종합운동장	민공사의 공휴일에 관한 규칙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의성체육관	민공사의 공휴일에 관한 규칙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의성종합체육관	민공사의 공휴일에 관한 규칙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의성군민테니스장	민공사의 공휴일에 관한 규칙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의성생활 체육야구장	민공사의 공휴일에 관한 규칙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개 정 안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1. 전문체육시설

시설명칭	위 치	관련 시설물
의성종합운동장	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104	축구경기장, 육상 트랙
의성체육관	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88	
의성종합체육관	의성군 의성읍 의성길안로 98	
의성군민테니스장	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88	
의성생활체육야구장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153	
의성읍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50	풋살장, 족구장, 탁구장
의성국민체육센터	의성군 단북면 안계길 251	
의성컬링센터	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72	
서의성탁구장	의성군 단북면 안계길 247	
비안파크골프장	의성군 비안면 동부리 162-1	
의성비안파크골프장	의성군 안평면 용기리 [illegible]안평구장 의성군 단북면 노안리 [illegible]단북구장	
의성여성전용헬스장	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104	

[별표 2] 체육시설의 정기 휴관일

시설명칭	휴 관 일	비 고
의성종합운동장	민공사의 공휴일에 관한 규칙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의성체육관	민공사의 공휴일에 관한 규칙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의성종합체육관	민공사의 공휴일에 관한 규칙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의성군민테니스장	민공사의 공휴일에 관한 규칙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의성생활체육야구장	민공사의 공휴일에 관한 규칙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현 행	개 정 안

의성읍농어촌복합체육시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의성국민체육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의성컬링센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 매주 월요일	
서의성탁구장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비안파크골프장	- 매주 월요일 - 매년 3월~4월 잔디 보호 정기 휴장	
의성여성전용헬스장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의성읍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의성국민체육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의성컬링센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 매주 월요일	
서의성탁구장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비안파크골프장	- 매주 월요일 - 매년 3월~4월 중 잔디 보호 정기 휴장	
의성원천파크골프장	- 매주 화요일 - 매년 3월~4월 중 잔디 보호 정기 휴장	
의성여성전용헬스장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별표3]체육시설의 운영기간 및 사용시간

시설명칭	운영기간 및 사용시간	비 고
의성종합운동장	- 운영기간: 연중(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09:00~22:30	
의성체육관	- 운영기간: 연중(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09:00~22:30	
의성종합체육관	- 운영기간: 연중(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09:00~22:30	
의성군민테니스장	- 운영기간: 연중(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09:00~22:30	
의성생활체육야구장	- 운영기간: 연중(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09:00~22:30	
의성읍 농어촌복합체육시설	- 운영기간: 연중(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09:00~22:30	
의성국민체육센터	- 운영기간: 연중(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09:00~21:00	
의성컬링센터	- 운영기간: 연중(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09:00~21:00	
서의성탁구장	- 운영기간: 연중(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09:00~22:30	
비안파크골프장	- 운영기간: 연중(휴장일 제외) - 사용시간: (하계) 06:00~18:00 (동계) 07:00~17:00	
의성여성전용헬스장	- 운영기간: 연중(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06:00~21:00	

[별표3]체육시설의 운영기간 및 사용시간

시설명칭	운영기간 및 사용시간	비 고
의성종합운동장	- 운영기간: 연중(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09:00~22:30	
의성체육관	- 운영기간: 연중(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09:00~22:30	
의성종합체육관	- 운영기간: 연중(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09:00~22:30	
의성군민테니스장	- 운영기간: 연중(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09:00~22:30	
의성생활체육야구장	- 운영기간: 연중(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09:00~22:30	
의성읍 농어촌복합체육시설	- 운영기간: 연중(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09:00~22:30	
의성국민체육센터	- 운영기간: 연중(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09:00~21:00	
의성컬링센터	- 운영기간: 연중(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09:00~21:00	
서의성탁구장	- 운영기간: 연중(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09:00~22:30	
비안파크골프장	- 운영기간: 연중(휴장일 제외) - 사용시간: (하계) 06:00~18:00 (동계) 07:00~17:00	
의성원천파크골프장	- 운영기간: 연중(휴장일 제외) - 사용시간: (하계) 06:00~18:00 (동계) 07:00~17:00	
의성여성전용헬스장	- 운영기간: 연중(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06:00~21:00	

【개 정】

◇ 개정이유

「신규 조성된 의성위천파크골프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성위천파크골프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별표1, 별표2, 별표3)

· 명칭 및 위치 : 의성위천파크골프장

- 안계구장 :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1124
- 단북구장 : 의성군 단북면 노연리 1084

· 정기 휴관일: 매주 화요일 및 잔디 보호 정기 휴장(3월 ~ 4월)

· 운영기간 및 사용시간

- 운영기간 : 연중(휴장일 제외)
- 사용시간 : (하계) 06:00 ~ 18:00, (동계) 07:00 ~ 17:00

훈 령

「의성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6년 9월 17일

의 성 군 수

의성군 훈령 제 512 호

의성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의성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실·국장”으로, “공간정보업무담당”을 “공간정보 업무 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을 “홍보과장, 기획예산과장”으로, “지역재생과장”을 “농촌활력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성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별표 1]

공간정보의 세부 분류기준(제9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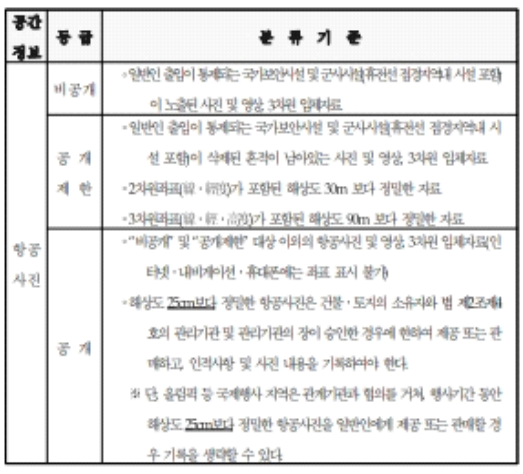
공간정보	등 급	분 류 기 준
항공사진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공 개 제 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 2차원좌표(緯·經度)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緯·經·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 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토지의 소유자와 법 제2조제4호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단,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위성영상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공 개 제 한	◦ 정밀 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cm보다 정밀한 자료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해상도 1.5m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 보다 정밀한 자료 ※ 단,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중 노출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방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축소 가능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 이외 지역의 자료(인터넷 내비게이션 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건내용 기록유지 ◦ 좌표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할 경우 정밀보정하지 않은 2차원 좌표만 포함 가능

공간정보	등 급	분 류 기 준
전자지도	비공개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공 개 제 한	◦ 군사지도 ◦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 단, 항공기 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 ◦ 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 ◦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표고값 표시 불가
해양공간정보	비공개	◦ 접경해역 수심 자료 ◦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인근해역 또는 접경해역 내 해상도 30m 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공 개 제 한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120m보다 정밀한 수심 자료 ※ 단, 공개제한 대상 수심이라도 항해안전, 해양레저, 해양공간정보 산업화 등에 필수적인 해역의 수심은 관계기관 협의 후 공개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수심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해저 영상자료 ◦ 해도, 전자해도 등
기 타 공간정보	비공개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정수장이 표시된 상하수시스템, 도로명 주소 기본도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의 명칭 및 속정자료
	공 개 제 한	◦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 ※ 단,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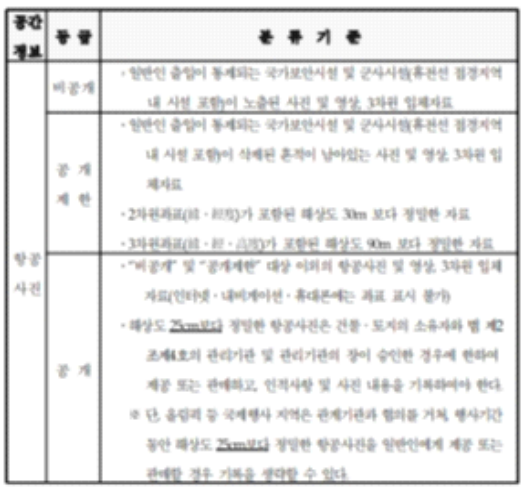
공간정보	등 급	분 류 기 준
기 타 공간정보	공 개	◦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영상자료 - 토양·지질·지번도, 도시·도로 건설계획도 등 ◦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 중 보안관리 대상 시설을 제외한 도로명주소 안내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간정보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원과 공간정보업무담당이 된다.	② ----------담당실·국장---------- 공간정보 업무 담당------.
③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총무과장, 민원과장, 관광문화과장, 안전건설과장, 지역재생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구성한다.	③ -----홍보과장, 기획예산과장---------농촌활력과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별표 1] 공간정보의 세부 분류기준	[별표 1] 공간정보의 세부 분류기준



공간정보	등급	분류기준
항공사진	비공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공개제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2차원자료(X·Y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 보다 정밀한 자료 ·3차원자료(X·Y·Z·高程)가 포함된 해상도 90m 보다 정밀한 자료
	공개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자료 표시 불가)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토지의 소유자와 법 제2조제4호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관람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단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관람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공간정보	등급	분류기준
항공사진	비공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공개제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2차원자료(X·Y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 보다 정밀한 자료 ·3차원자료(X·Y·Z·高程)가 포함된 해상도 90m 보다 정밀한 자료
	공개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자료 표시 불가)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토지의 소유자와 법 제2조제4호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관람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단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관람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현 행

위성영상	비공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공개제한	◦정밀 보정된 2차원자료가 포함된 해상도 30cm보다 정밀한 자료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해상도 4m 보다 정밀한 자료 ◦3차원자료가 포함된 해상도 90m 보다 정밀한 자료
	공개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 이외 지역의 자료(인터넷 내비게이션 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단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건내용 기록유지
전자지도	비공개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공개제한	◦군사지도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단 항공기 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 ◦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

공간정보	등급	분류기준
"	공개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표고값 표시 불가
해양공간정보	비공개	◦점경해역 수심 자료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인근해역 또는 점경해역 내 해상도 30m 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공개제한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120m보다 정밀한 수심 자료 ※단, 공개제한 대상 수심이라도 항해안전, 해양레저, 해양공간정보 산업화 등에 필수적인 해역의 수심은 관계기관 협의 후 공개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공개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수심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해저 영상자료 ◦해도, 전자해도 등
기타공간정보	비공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정수장이 표시된 상하수시스템, 도로명주소 기본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의 명칭 및 속성자료
	공개제한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해상도가 90m 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 ※단, 해상도 90m 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
	공개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 보다 낮은 임체영상자료 - 도양·지질·지번도, 도시·도로 건설계획도 등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 중 보안관리 대상 시설을 제외한 도로명주소 안내도

개 정 안

위성영상	비공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공개제한	◦정밀 보정된 2차원자료가 포함된 해상도 30cm보다 정밀한 자료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해상도 1.5m 보다 정밀한 자료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 보다 정밀한 자료 ◦단,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중 노출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방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축소 가능
	공개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 이외 지역의 자료(인터넷 내비게이션 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단,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건내용 기록유지 ◦좌표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할 경우 정밀보정하지 않은 2차원 좌표만 포함 가능

공간정보	등급	분류기준
전자지도	비공개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공개제한	◦군사지도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단, 항공기 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 ◦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
	공개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표고값 표시 불가
해양공간정보	비공개	◦점경해역 수심 자료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인근해역 또는 점경해역 내 해상도 30m 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공개제한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120m보다 정밀한 수심 자료 ※단, 공개제한 대상 수심이라도 항해안전, 해양레저, 해양공간정보 산업화 등에 필수적인 해역의 수심은 관계기관 협의 후 공개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공개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수심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해저 영상자료 ◦해도, 전자해도 등
기타공간정보	비공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정수장이 표시된 상하수시스템, 도로명주소 기본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의 명칭 및 속성자료
	공개제한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해상도가 90m 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 ※단, 해상도 90m 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
	공개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 보다 낮은 임체영상자료 - 도양·지질·지번도, 도시·도로 건설계획도 등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 중 보안관리 대상 시설을 제외한 도로명주소 안내도

【개 정】

◇ 개정이유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간정보 보안관리 체계 유지 및 공간정보 활용성 제고

◇ 주요내용

○ 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 현행화(별표 1)

- 공개제한 위성영상 해상도 기준 완화(4m → 1.5m)
- 보안처리 대상 축소 협의 근거(국정원·국방부 협의) 및 온라인 배포 시 좌표 기준 신설

○ 공간정보 보안심의회 구성 정비(안 제7조)

- 부위원장 및 위원 직책명 현행화

「의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6년 9월 17일

의 성 군 수

의성군 훈령 제 513 호

의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의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부단장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별표 2]

단원의 자격요건(제8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구 분	자격요건		비 고
지도자	감독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 기준에 따른 해당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코치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 기준에 따른 해당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또는「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별표 2의 교사 자격 기준에 따른 체육분야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의성군 직장운동경기부 2년 이상 소속되었던 선수 중 경기실적 및 품행이 우수한 자	
선 수	○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되거나 등록되었던 선수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최근 3년 이내에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 규모 이상 대회의 상위 입상자 -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		

■ 의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별표 3]

지도자 임용 평가기준(제8조제2항 관련)

1. 평가구성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 점
합계		100점
지도경력	지도경력 기간	30점
경기 지도 성과	각종 대회 우승 및 입상 지도 실적	55점
전문성 및 인성	조직관리 능력 및 태도	`15잠

※ 경기 지도 성과는 최근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한다.

※ 동일 실적이 둘 이상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높은 점수의 실적 1건만 반영한다.

※ 각종 실적은 대한씨름협회 및 대한컬링연맹 등 공인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가. 씨 름

구 분	세부 기준	배 점
지도경력 (30점)	10년 이상	30점
	7년 이상 ~ 10년 미만	25점
	5년 이상 ~ 7년 미만	20점
	3년 이상 ~ 5년 미만	15점
	3년 미만	10점
경기지도 성과 (55점)	천하장사대회 우승 지도	55점
	민속씨름대회 우승 지도	50점
	민속씨름리그 또는 전국체전 우승 지도	45점
	민속씨름대회 또는 민속씨름리그 입상 지도	35점
	기타 전국규모 대회 우승 지도	25점
	기타 전국규모 대회 입상 지도	15점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 경기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	10점
전문성 및 인성 (15점)	매우 우수	15점
	우수	12점
	보통	9점
	미흡	6점 이하

나. 컬 링

구 분	세부 기준	배 점
지도경력 (30점)	10년 이상	30점
	7년 이상 ~ 10년 미만	25점
	5년 이상 ~ 7년 미만	20점
	3년 이상 ~ 5년 미만	15점
	3년 미만	10점
경기지도 성과 (55점)	올림픽 입상 지도	55점
	세계선수권대회 또는 아시안게임 입상 지도	50점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출전한 기타 국제대회 입상 지도	45점
	한국컬링선수권대회 또는 전국체육대회 입상 지도	35점
	기타 전국규모대회 우승 지도	25점
	기타 전국규모대회 입상 지도	15점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 경기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	10점
전문성 및 인성 (15점)	매우 우수	15점
	우수	12점
	보통	9점
	미흡	6점 이하

신·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제5조(인사·운영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위원장은 부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 ⑨ (생 략)

[별표 2] 단원의 자격요건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자격요건</th><th>비 고</th></tr>
<tr><td rowspan="2">지도자</td><td>감독</td><td>○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기준에 따른 해당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자</td><td></td></tr>
<tr><td>코치</td><td>○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기준에 따른 해당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의성군 직장운동경기부 2년 이상 소속되었던 선수 중 경기실적 및 품행이 우수한 자</td><td></td></tr>
<tr><td>선 수</td><td colspan="2">○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되거나 등록되었던 선수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최근 3년 이내에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 규모 이상 대회의 상위 입상자
-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td><td></td></tr>
</table>

[별표 3] 지도자 임용 평가기준

1. 평가구성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 점
합계		100점
지도경력	지도경력 기간	30점
경기 지도 성과	각종 대회 우승 및 입상 지도 실적	55점
전문성 및 인성	조직관리 능력 및 태도	15점

※ 경기 지도 성과는 최근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한다.
※ 동일 실적이 둘 이상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높은 점수의 실적 1건만 반영한다.
※ 각종 실적은 대한씨름협회 및 대한민국연맹 등 공인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td><td>

제5조(인사·운영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부단장으로 한다.

⑤ ~ ⑨ (현행과 같음)

[별표 2] 단원의 자격요건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자격요건</th><th>비 고</th></tr>
<tr><td rowspan="2">지도자</td><td>감독</td><td>○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기준에 따른 해당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자</td><td></td></tr>
<tr><td>코치</td><td>○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기준에 따른 해당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별표 2의 교사 자격기준에 따른 체육분야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의성군 직장운동경기부 2년 이상 소속되었던 선수 중 경기실적 및 품행이 우수한 자</td><td></td></tr>
<tr><td>선 수</td><td colspan="2">○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되거나 등록되었던 선수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최근 3년 이내에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 규모 이상 대회의 상위 입상자
-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td><td></td></tr>
</table>

[별표 3] 지도자 임용 평가기준

1. 평가구성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 점
합계		100점
지도경력	지도경력 기간	30점
경기 지도 성과	각종 대회 우승 및 입상 지도 실적	55점
전문성 및 인성	조직관리 능력 및 태도	15점

※ 경기 지도 성과는 최근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한다.
※ 동일 실적이 둘 이상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높은 점수의 실적 1건만 반영한다.
※ 각종 실적은 대한씨름협회 및 대한민국연맹 등 공인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td></tr>
</table>

현 행

2.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가. 씨 름

구 분	세부 기준	배 점
지도경력(30점)	10년 이상	30점
	7년 이상 ~ 10년 미만	25점
	5년 이상 ~ 7년 미만	20점
	3년 이상 ~ 5년 미만	15점
경기지도 성과 (55점)	천하장사대회 우승 지도	55점
	민속씨름대회 우승 지도	50점
	민속씨름리그 또는 전국체전 우승 지도	45점
	민속씨름대회 또는 민속씨름리그 입상 지도	35점
	기타 전국규모 대회 우승 지도	25점
	기타 전국규모 대회 입상 지도	15점
전문성 및 인성 (15점)	매우 우수	15점
	우수	12점
	보통	9점
	미흡	6점 이하

나. 컬 링

구 분	세부 기준	배 점
지도경력(30점)	10년 이상	30점
	7년 이상 ~ 10년 미만	25점
	5년 이상 ~ 7년 미만	20점
	3년 이상 ~ 5년 미만	15점
경기지도 성과 (55점)	올림픽 입상 지도	55점
	세계선수권대회 또는 아시안게임 입상 지도	50점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출전한 기타 국제대회 입상 지도	45점
	한국컬링선수권대회 또는 전국체육대회 입상 지도	35점
	기타 전국규모대회 우승 지도	25점
	기타 전국규모대회 입상 지도	15점
전문성 및 인성 (15점)	매우 우수	15점
	우수	12점
	보통	9점
	미흡	6점 이하

개 정 안

2.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가. 씨 름

구 분	세부 기준	배 점
지도경력(30점)	10년 이상	30점
	7년 이상 ~ 10년 미만	25점
	5년 이상 ~ 7년 미만	20점
	3년 이상 ~ 5년 미만	15점
	3년 미만	10점
경기지도 성과 (55점)	천하장사대회 우승 지도	55점
	민속씨름대회 우승 지도	50점
	민속씨름리그 또는 전국체전 우승 지도	45점
	민속씨름대회 또는 민속씨름리그 입상 지도	35점
	기타 전국규모 대회 우승 지도	25점
	기타 전국규모 대회 입상 지도	15점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 경기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	10점
전문성 및 인성 (15점)	매우 우수	15점
	우수	12점
	보통	9점
	미흡	6점 이하

나. 컬 링

구 분	세부 기준	배 점
지도경력(30점)	10년 이상	30점
	7년 이상 ~ 10년 미만	25점
	5년 이상 ~ 7년 미만	20점
	3년 이상 ~ 5년 미만	15점
	3년 미만	10점
경기지도 성과 (55점)	올림픽 입상 지도	55점
	세계선수권대회 또는 아시안게임 입상 지도	50점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출전한 기타 국제대회 입상 지도	45점
	한국컬링선수권대회 또는 전국체육대회 입상 지도	35점
	기타 전국규모대회 우승 지도	25점
	기타 전국규모대회 입상 지도	15점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 경기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	10점
전문성 및 인성 (15점)	매우 우수	15점
	우수	12점
	보통	9점
	미흡	6점 이하

【개 정】

◇ 개정이유

○ 인사·운영위원회 운영 및 지도자 임용 관련 현행 규정의 미비사항 보완

○ 지도자 자격요건 및 지도경력·경기지도 성과 평가기준의 구체화

◇ 주요내용

○ 인사·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도록 개정하여 공정한 의사결정 기반 마련

○ 단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별표 2)

- 지도자 중 코치의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다양한 체육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임용 가능하도록 자격기준 현실화

○ 지도자 임용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별표 2)

- 지도경력 및 경기지도 성과에 대해 최저점수를 부여하여 평가기준 세분화